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6. 20(목) 10:00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
관한 조례안

(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53호
- 나. 제 출 자 : 이인식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2. 제안이유

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(안 제8조 및 제9조)
- 마.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바.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 및 업무의 위탁(안 제12조 및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1)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 - 2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
3)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5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4. 5. 29. ~ 2024. 6. 5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 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2)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
-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종합 시책 수립 등의 책무를 규정함
-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함

3)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
- 장애예술인 활동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
-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,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, 공연 및 전시활동,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함

4)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(안 제8조 및 제9조)

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(안 제10조 및 제11조)

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 및 업무의 위탁(안 제12조 및 제13조)

-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(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), 제10조(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), 제11조(장애예술인

고용지원), 제12조(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), 제13조(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)의 규정을 적용하여 규정함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활동을 촉진하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8987호, 2022. 9. 27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1. 28.] [법률 제18334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24조(문화·예술활동의 차별금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·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·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·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·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·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·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·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[시행 2023. 12. 21.] [법률 제19480호, 2023. 6. 20., 일부개정]

제15조의2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

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·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공연·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